

「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위탁운영 등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며, 수어통역센터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운영 등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

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- (당초)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
(변경) 장애인복지시설

나.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(당초) 「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」, 장애인복지위원회
(변경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,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

다. 수어통역센터 2개소 명칭 현행화(안 별표 1)

- (당초) 경북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, 구미수어통역센터
(변경) 경상북도 수어통역지원센터, 구미시 수어통역센터

라. 용어 정비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장애인복지시설로 위탁운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,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 및 시설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, 이를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위원회 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, 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이 상이한 만큼,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법정 심의기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간 관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.